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2
----------	-------

제출년월일 : 2004. 6. 10.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등 입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법제업무운영규정(2004.1.9 대통령령 제18218호)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2004.2.14 총리령 제748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중요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자치법규안 주관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의견제출기관·의견제출기간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자치법규안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주민의 입법참여를 쉽게 하며, 유료입법예고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를 삭제한다.

제2조 (입법예고대상) ①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의 실·국·소장(이하 “주관국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기획관리실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국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③자치법규안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입법예고방법) ①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등 입법예고의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주관국장은 시보외에도 신문·인터넷·방송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주관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의견제출기관·의견제출기간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주관국장은 당해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주요정책사항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후
제2조 (입법예고 대상)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주관 실·국·소장 (이하 "주관국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주관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대상 자치법규 외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할 수 있다. ③기획관리실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국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2조 (입법예고 대상) ①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의 실·국·소장(이하 "주관국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기획관리실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국장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③자치법규안 주관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대상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후
제4조 (입법예고방법) ①주관국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기획관리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기획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파주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주관국장은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4조 (입법예고방법) ①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 등 입법예고의 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주관국장은 시보외에도 신문·인터넷·방송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주관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의견제출기관·의견제출기간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주관국장은 당해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주관국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주요정책사항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후
제7조 (의견제출) ①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국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간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출의견의 처리) ①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기간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관국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파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지방자치의 발전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등 입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법제업무운영규정(2004. 1. 9 대통령령 제18218호)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2004. 2.14 총리령 제748호)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안 제2조)
- 나. 자치법규안 주관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의견제출기관·의견제출기간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자치법규안 전문을 게재하도록 하여 주민의 입법참여를 쉽게 하며, 유료입법예고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8218호)과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748호)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제도는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임.
- 금번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지방행정의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가 복잡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자치입법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 후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나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함.
-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의견제출기관·의견제출기간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자치법규 전문을 게재토록 하였음.
- 이와 같은 조치는 현행 조례에서 자치법규(조례) 개정의 경우 개정내용만을 게재하던 방법에서 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 전문을 게재토록 하여 주민들의 입법참여를 쉽게 한 조치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임.
- 동 조제5항에서는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주요정책사항이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유료 입법 예고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 참고적으로 우리 시의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 191건, 규칙 99건 등 총 290건의 자치법규가 운영 중에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관련규정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자치입법 참여를 확대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

법 제 업무 운영 규정

[일부개정 2004. 01. 09 대통령령 제18218호]

제20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법 제 업무 운영 규정 시행 규칙

[일부개정 2004. 02. 14 총리령 제748호]

제20조 (입법예고 예외사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발생으로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